

Premium Report 제43호
(2018. 1. 31)

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시행

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

작성 자 : 김서경 선임연구원
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22 / E - ksk@kici.re.kr

1

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시행

| 국내 입찰문화 특성(과다경쟁, 저가낙찰, 적격심사에 의한 고정 낙찰률 등)상 **계약단가** 만으로 산정되는 실적공사비는 시장단가를 적정하게 반영 할 수 없어, 계약·입찰·시공 단가 등 **다양한 시장 가격정보를 반영 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시장단가** 로의 전환을 추진



| 이에 정부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활용되던 **실적공사비를 폐지**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**표준시장단가를 국가계약법에 도입**하였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활한 **정보통신공사의 표준시장단가 도입**을 위해 2년여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,

| **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를 대상**(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,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)으로 우선 적용 **공종 66개의 표준시장단가를 2018년 1월 1일 발표 및 시행**

2

예정가격 결정기준

| 예정가격은 ①거래실례가격, ②원가계산 가격, ③표준시장단가 ④감정가격, 유사한 물품·공사·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해 산정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)

※ 예정가격 :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·비치 하는 공사원가액



01

거래실례가격

-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
- ※ 조달청, 전문가계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

02

원가계산가격

- 공사·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
- 재료비·노무비·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

03

표준시장단가

-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

04

감정/견적가격

- 거래실례가격,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, 표준시장단가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, 유사한 물품·공사·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

3

표준시장단가의 정의(1)

| 이미 수행한 공사의 **종류별 시장거래가격**(계약단가, 입찰단가, 시공단가 등)을 토대로 **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**로서 **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**

|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**예정가격**은 **직접공사비, 간접공사비, 일반관리비, 이윤,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**의 **합계액**으로 구성



| **직접공사비** :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, 계약 목적물을 세부공종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을 적용하여 산정

- 재료비 :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
- 직접노무비 :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기본급, 제수당, 상여금 등의 합계액
- 직접공사경비 :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, 운반비, 전력비, 가설비, 등으로 구성

| **간접공사비** :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,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

- 간접노무비,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건강 보험료, 기타 간접공사경비(수도광열비 등) 등

| **일반관리비** :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(5~6%)을 곱하여 산정

| **이윤** :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,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 비의 합계액에 이윤율(최대 15%)을 곱하여 산정

4

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의 비교

구 분	주 요 내 용
원가계산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무비, 재료비, 경비를 각각 구분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결정과정이 복잡하며, 담당자의 견적능력 및 자재 조사단가에 따라 공종별 단가가 달라 질 수 있음. • 노무비 : 공종별 표준품셈의 품 x 노임단가(시중노임) x 수량 • 재료비 : 자재가격(물가정보, 조달청자재단가 등) x 수량 • 경 비 : 직접경비(기계경비 등), 간접경비(4대보험 등)로 구분하여 산출
표준시장단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미 수행된 공사의 내역서로부터 공종별 계약단가, 입찰단가,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추출한 공종별(직접노무비+재료비+직접경비)를 통해 산정되는 방식으로 공사비 결정과정이 효율적이며, 일관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함.

5

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산정 방법

| 주요 발주기관을 통해 이미 수행한 공사의 **종류별 시장거래가격**(계약단가, 입찰단가, 시공단가등)을 연 2회 조사하여 **공종별 표준시장단가**를 산정 및 축적

※ 주요 발주기관 : 광역 및 기초 지자체, 공공기업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역도시개발공사 등

구 분	주요내용
계약단가	• 낙찰업체가 제출한 계약내역서로 부터 추출한 공종별 단가
입찰단가	• 발주처가 입찰을 위해 설계한 설계내역서로 부터 추출한 공종별 단가
시공단가	• 시공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공종별 시공단가

| 1)수집된 시장거래가격 내역서를 분석 가능여부에 따라 선별하고, **일위대가 분석**을 통해 공종별 단가 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의 적정성 판단 후 **공사비지수를 통해 물가 변동**을 반영 하여 기초단가로 축적

| 2)축적된 기초단가 중 단가의 객관성이 높은 공종을 선정해 **전문위원회**와 **심의위원회의** (발주기관과 설계 및 공사업체로 구성) 심의를 거쳐 **표준시장단가**로서 축적

6

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축적 및 적용

|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및 축적 결과

※ 2012년 이후 연간 약 200~300여개의 신규공종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제·개정 해옴

시설 분야		단가 산정 결과
구내통신분야	공동주택시설	540개 공종
	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시설	380개 공종
통신선로분야		38개 공종
정보제어 및 보안분야		146개 공종
합 계		1,104개 공종

- | 시설 분야별 설계 및 계약내역서(연간약1,200건)분석을 통해 현재 **1,104개의 공종별 표준시장단가를 산정 및 축적**하였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**2018년 1월 1일 선행적 공종 66개를 선정하여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토록 발표함**
- | 현재 발표된 타 분야별 표준시장단가 현황은 **건설공사 1,940개 공종, 전기공사 98개 공종**

|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

- **자재단가 조사의 어려움과 표준품셈을 통한 공종별 노무비 산정이 복잡한 원가계산 방식의 예정가격 작성에서 벗어나 재료비, 직접노무비, 직접경비가 하나로 합산되어 발표되는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함으로써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**

|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

- 발주기관의 관행적 설계 및 특별한 삭감 기준 없는 **표준품셈의 일률적 삭감**(보통20~30%, 최대 40~70%)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애로점이 많음
- 따라서 계약, 입찰, 시공단가 등 정보통신공사의 **현실적 시장단가를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를 시행**함으로써, 정보통신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기여

**|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
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해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는
올바른 정보통신공사 환경 조성**

